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78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기 한 연장 및 한도 확대	3
2.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 장	9

I. 개요

1.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78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운영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8.

(3) 회 부 일 : 2025. 9.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청년층이 유출되고 있음. 후계농이 적정하게 양성되지 못할 경우 농업의 지속성과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의 약화가 예상됨. 실제로 2015년 국가 전체의 고령화율은 13.2%에서 2023년 18.6%으로 증가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2015년 38.4%에서 2023년 52.6%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는 자경농민이 영농의 계승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농지·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5년간 합산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 제도는 영농승계로 농업·축산업 용지를 취득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농촌 인력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는 농촌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

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귀농·귀촌을 간접 지원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 완화와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귀농하는 영농자녀 및 후계농 유입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 및 귀농·귀촌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안 제71조 및 제99조의4).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한도 확대

현 행	개정안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71조) -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농지·어선·어업권·축사용지 등을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 적용기한 연장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 2028년 12월 31일(이만희·주철현·이병진·추경호·윤영석의원안, 정부안) 2029년 12월 31일(김선교의원안) 2030년 12월 31일(문대림·서천호·윤준병·유상범·임호선 의원안)
☐ 감면 한도(제133조) 5년간 감면 한도: 1억원	☐ 감면 한도 확대 5년간 감면 한도: 2억원(문대림의원안) 5억원(이만희의원안)

*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서천호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21), 문대림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34) 김선교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40), 이만희의원안 2025. 3. 26. 발의(의안번호 9356) 이병진의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2), 이병진의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2018), 유상범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54) 임호선의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윤영석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2),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동 증여세의 감면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1년 연장하는 안(서영교의원안), 3년 연장하는 안(이만희·주철현·이병진·추경호·윤영석의원안, 정부안), 4년 연장하는 안(김선교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문대림·서천호·윤준병·유상범·임호선 의원안)이 제시되었음.

감면한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5년간 합산 '1억원'의 감면한도를 문대림의원안은 '2억원'으로, 이만희의원안은 '5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음.

□ 동 특례제도는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조기이전 하도록 함으로써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1986년에 도입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¹⁾에서는 자경농민 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등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초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1억원(5년간 증여세액 합계 기준)을 한도로²⁾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④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동 특례제도가 적용된 감면세액은 2021년도 773억원, 2024년도 476억원의 실적치를 기록하였고, 2026년도에는 543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773	712	654	476	506	543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조세감면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자유전의 원칙, 농·어민 이익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으로 자경농민 등이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 적용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³⁾의 경우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속세제의 기본 공제제도로서 계속 운영되고 있음.

둘째,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자유전 원칙 유지 측면에서 증여세 감면 혜택의 계속 적용을 통해 농어업 인력의 세대교체 촉진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농가 경영주는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9만 5천 가구(전체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농가의 50.8%)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3만 2천 가구(33.1%), 50대는 12만 5천 가구(12.9%)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3.6%)하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974 (100.0)	5 (0.5)	27 (2.8)	125 (12.9)	322 (33.1)	495 (50.8)
증 감	-25.3	-0.8	-5.7	-16.1	-20.1	17.4
증감률	-2.5	-15.4	-17.3	-11.4	-5.9	3.6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4년 어가 경영주 또한 70세 이상이 1만 7천 가구(전체 어가의 41.9%)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만 5천 가구(37.2%), 50대는 6천 가구(13.8%)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7.4%) 경영주는 증가하였으나 나머지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어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40.9 (100.0)	0.4 (1.0)	2.5 (6.1)	5.7 (13.8)	15.2 (37.2)	17.1 (41.9)
증 감	-0.9	-0.1	-0.2	-0.7	-1.1	1.2
증감률	-2.1	-25.0	-6.7	-10.7	-6.7	7.4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셋째, 사후 상속시 적용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을 일정

맞추어 젊은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

현재 자경농민 등이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⁴⁾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일몰기한을 정하지 않은 영구적 제도로 운용되고 있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억원으로 증여보다 유리점이 커 상속 시까지 농지 등의 이전을 이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넷째, 2006년 12월 31일 해당 감면한도 규정 신설 시 1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세 감면 한도를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감면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0년 물가를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007년 소비자물가지수는 78.01이고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로서 그간의 물가상승분에 따른 한도액의 실질가치 하락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7	2010	2015	2020	2024
소비자물가지수	78.010	86.373	94.861	100	114.18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2020년=100 기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감면한도의 상향은 기존 감면실적과 평균 감면액 등 고려 시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490명의 수증자 중 53%(13,097명)는 1,000만원 미만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억원 이상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비중은 4.49%(1,1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둘째, 적용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영농·영어가의 고령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젊은 후계자에게 농지 등이 조기에 이전 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와 같이 영구적 제도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2.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현 행	개정안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9조의4) ○ 대상 -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건설취득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 · ① 기회발전특구, ②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지역 등이 아님 · 읍·면, ③ 인구 20만 이하 시(市)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④ 취득당시 주택·토지가격 합계액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 고향주택 · ① 고향소재, ② 수도권지역,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외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소재, ③ 취득당시 주택·토지가격 합계액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 <u>적용기한</u> - <u>2025년 12월 31일</u>	□ <u>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u> ○ (현행과 같음) ○ <u>적용기한 연장</u> - <u>2027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이원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이만희의원안, 김선교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서천호의원안, 김형동의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u>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제8766호), 이원택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제8981호), 서천호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제9021호), 이만희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제9189호), 김선교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제9340호), 김형동의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제11203호), 엄태영의원안 2025. 8. 14. 발의(의안번호 제12167호), 임호선의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제12620호), 윤영석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제12782호),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제12789호),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제12653호)

□ 11건의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엄태영의원안·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말(2년 연장)로, 이원택의원안·윤영석의원안과 정부안은 2028년 말(3년 연장)로, 이만희의원안·김선교의원안은 2029년 말(4년 연장)로, 윤준병의원안·서천호의원안·김형동의의원안·임호선의의원안은 2030년 말(5년 연장)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⁵⁾에서는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가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택과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3년 이상 보유할 것을 전제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과세특례의 대상인 농어촌주택은 ①기회발전특구, ②수도권(접경지역 제외),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지역 등이 아닌 읍·면, ③인구 20만 이하 시(市)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④취득당시 주택·토지가액 합계액 3억원(한옥 4억원) 이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고향주택은 ①「조세특례제한법」상 고향⁶⁾인 지역이면서 ②일정 인구(20만)이하인 시 지역에 소재(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등 제외), ③취득당시 주택·토지가액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함.

-
-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 1) 수도권지역
 -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6)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 포함)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및 10년 이상 거주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지역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2] (고향주택 소재 지역범위) 에 구체적 지역이 열거되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

구분	시 (26개)
충청북도(1)	제천시
충청남도(6)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4)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전라북도(3)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2)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6)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3)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1)	서귀포시

*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동 조세특례는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 및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따라 2003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후 주기적으로 일몰 기한이 연장되었음.

통계청의 귀농어·귀촌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농·귀어·귀촌 가구수는 31만 7,464가구로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귀농·귀어·귀촌 가구⁷⁾ 수]

(단위: 가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귀농가구	12,489	14,347	12,411	10,307
귀어가구	897	1,135	951	716
귀촌가구	345,205	363,397	318,769	306,441
합계	358,591	378,879	332,131	317,464

* 자료: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동 조세특례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귀농·귀촌 인구를 유인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목적이 있음.

귀농·귀촌을 희망하여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경우 기존 보유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귀농·귀촌에 따른 경제적 부담(농지취득·농업경영자금 확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별로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

7) ※ 귀농·귀어·귀촌인 :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 (귀어인)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된 사람
 - (귀촌인)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귀어인 및 동반 가구원 제외

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동 과세특례의 세수감소 효과는 신고서에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감면세액을 기재하지 않아 별도 세액 추정이 어려움.⁸⁾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8)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p.81)